

종 류	연수휴직	가족돌봄휴직	동반휴직	자율연수휴직
근 거	제8호	제9호	제10호	제12호
요 건	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	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. 다만,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	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	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
기 간	3년 이내	1년 이내 (재직기간 중 총 3년)	3년 이내 (3년 연장가능)	1년 이내 (재직기간 중 총 1회에 한함)
승진평정 경력기간	• 경력평정: 50% 산입	• 경력평정: 제외	• 경력평정: 제외	• 경력평정: 제외
승급	• 승급제한 (단, 학위 취득에 따른 호봉 재획정은 함)	• 승급제한	• 승급제한	• 승급제한
결원보충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
보 수	지급안함	지급안함	지급안함	지급안함
수 당	지급안함	지급안함	지급안함	지급안함
기 타	「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」			

※ 공통수당: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장기근속수당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보전수당

「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에 의거 임용권자가 청원휴직을 하기함에 있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다. 휴직의 효력 및 복직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)

1) 휴직의 효력

- 가)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
- 나)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(외국정부의 영예수허, 겸직금지, 집단 행위의 금지, 정치운동의 금지, 비밀엄수 등)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
- 다)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,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. 또한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3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면직 처분도 가능함.
이 경우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바로 퇴직 또는 면직처분할 수 있음

2) 복직

- 가)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→ 자체 없이 복직 조치
 - 나)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 → 당연복직
- ※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